

복지용구 관련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①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가급여

바. 기타재가급여 :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9조

제9조(기타재가급여) 법 제23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기타재가급여는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제공하거나 대여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9조(기타재가급여 제공기준 등) ① 장기요양기관은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이하 “복지용구”라 한다)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품목별 사용 가능 횟수 등을 고려하여 구입 및 대여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복지용구의 품목별 급여대상의 범위, 급여결정방법, 세부적인 제공기준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복지용구의 급여품목, 품목별 급여대상의 범위, 세부적인 제공기준 및 절차, 전문적인 심의기구의 구성·운영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책자의 구성

가격 · 월 대여가격
 사용가능했수 이내 대여료 = 월 대여료
 사용가능했수 이후 대여료 = 연장 대여료

복지용구품목 구분

구입 · 대여 구분

수동휠체어

대여 품목

제품 코드

연번 16

제품명 M18030043002 HAL-48(22D)

제품 색상

제품 사이즈

월대여료 **44,600원** / 연장대여료 **22,300원**

이동변기

목욕의자

성인용 보행기

안전 손잡이

미끄럼 방지용품

간이변기

지팡이

욕창예방 방식

자세변환 용구

요실금 팬티

제품 코드

연번 17

제품명 M18030043004 Mirage2(16D)

제품 색상

좌면 사이즈

제품 사이즈

월대여료 **29,400원** / 연장대여료 **14,700원**

수동 휠체어

품목 구분

품목 아이콘

제품 코드

연번 18

제품명 M18030043005 Mirage22D

제품 색상

제품 사이즈

월대여료 **26,900원** / 연장대여료 **13,500원**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목조

목욕 리프트

배회 감지기

욕창예방 매트리스

경사로 (실외)

경사로 (실내)

제품사양 및 주요특징
 - 제품사양 및 주요특징은 해당업체에서 제출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업체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용구품목 목차

복지용구 급여안내

급여대상자



- 장기요양인정서에 재가급여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대상자로 표시된 경우에 한하여 복지용구 이용이 가능합니다.
-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신 어르신은 복지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하실 수 없습니다.

급여방식



- 구입방식 : 구입품목의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
- 대여방식 : 대여품목의 제품을 일정기간 대여하여 사용하는 방식

급여비용 본인부담률



일반 대상자	감경		타법령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보험료 순위 25% 초과 50% 이하	보험료 순위 25% 이하		
15%	9%	6%	6%	면제

급여비용 연한도액



-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받을 수 있으며, 연한도액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최초 인정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매 1년간이며, 한도액은 160만원입니다.
- 복지용구 급여비용(본인부담금+공단부담금)은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연한도액 초과 시 전액 본인 부담합니다.

복지용구 급여안내

복지용구 이용 전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항

- 사용 가능 헛수가 정해진 품목은 재료의 재질·형태·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사용 가능 헛수 내에서 품목당 1개의 제품만 이용 가능합니다.
단, 성인용보행기는 2개, 경사로(실내용)는 6개까지 사용 가능 헛수 내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경우에도 각 품목당 1개 제품만 대여할 수 있으나, 사용 가능 헛수가 경과한 제품 중 제품의 외형 및 작동상태 등 최소한의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은 사용 가능 헛수의 1/2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대여할 수 있습니다.
- 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동일품목으로 1개의 제품만 이용 가능합니다.
- 구입 또는 대여 품목인 욕창예방매트리스의 경우 수급자는 구입 및 대여를 동시에 할 수 없습니다.
- 사용 가능 헛수가 정해지지 않은 품목 중 미끄럼방지용품, 자세변환용구, 안전손잡이, 간이변기, 요실금팬티는 수급자의 연한도액 적용구간에 「구입가능 갯수」를 초과하여 구입할 수 없습니다.

〈연한도 적용구간 내 구입가능 갯수〉

미끄럼방지용품 (매트)	미끄럼방지용품 (양말)	자세변환용구	안전손잡이	간이변기	요실금팬티
5개	6켢레	5개	10개	2개	4개

- 수급자가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타 법령에 의해 지급받은 경우 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법(장애인 보조기기) : 수동휠체어, 지팡이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재활보조기구) : 수동휠체어, 욕창예방방석 등

복지용구 급여안내

복지용구 이용 중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항

- 수급자의 신체상태 변화, 구입한 복지용구 훼손 등으로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는 품목 및 제품 변경을 원할 경우 추가급여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한 동안에는 전동·수동침대·이동욕조·목욕리프트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단,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기간 도중에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에는 입원기간 중 최대 15일까지 산정할 수 있습니다.
- 복지용구 대여가격은 월 단위로 산정하며 월이라 함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의미합니다. 월 중에 급여가 시작되거나, 종료된 경우 일자별로 산정합니다. 다만, 연속된 대여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 15일로 산정합니다.
- 수급자가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기간 도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 다음날로부터 최대 7일까지 산정할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 이용절차

1

복지용구사업소 방문상담

수급자 또는 가족 등이 사업소를 방문 상담

-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제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먼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복지용구 급여이용을 위해 입소이용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함

2

급여가능 여부 확인

복지용구사업소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수급자의 신청내역에 대한 급여 가능 여부를 조회
- 급여 가능 여부 확인내용
 - 장기요양급여 유효기간(수급자격)
 - 연한도액
 - 기존 구입물품의 사용 가능 했수
 - 대여제품의 중복 여부
 - 타 법령 중복급여 여부 및 사용 가능 했수
 - 시설입소 여부
 - 신체기능 상태에 따른 품목별 급여 가능 여부

3

복지용구 계약체결 및 제공

복지용구사업소 · 수급자

- 계약체결(사업소는 계약서 2부를 작성, 1부는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보관)
-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시·군·구에서 승인된 입소이용의뢰서와 동일하게 계약체결 함

복지용구사업소

- 본인부담금 수납
- 복지용구 제공
- 복지용구 사용방법, 사용상 유의사항, 고장 시 처리방법 등을 안내

복지용구 이용절차

4

계약내용 통보

복지용구사업소

- 수급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단에 포털을 통하여 통보
- 급여계약이 변경된 경우도 동일하게 처리

5

급여비용 청구 및 지급

복지용구사업소

- 공단 포털로 청구 또는 전산매체 청구

6

장기요양 급여제공기록지(복지용구) 작성

복지용구사업소

- 구입제품은 수급자에게 제공 시에 작성
- 사업소는 급여제공기록지를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직접 제공
- 장기요양 급여제공기록지는 1부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복지용구사업소 보관

복지용구 품목별 안내

품목					사용가능횟수
구입 품목	1		이동변기	화장실로 이동하기 어려운 경우 용변을 쉽고 안전하게 볼 수 있는 용품	5년
	2		목욕의자	목욕 시 자세유지 및 편안한 목욕을 도와주는 용품	5년
	3		성인용보행기	보행이 불편한 경우 실내·외에서 혼자서 이동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용품	5년
	4		안전손잡이	손잡이를 부착하여 자립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용품	없음
	5		미끄럼방지용품	실내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여 낙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용품(양말, 매트)	없음
	6		간이변기	와상상태, 소변조절 등이 어려운 경우 용변을 쉽고 안전하게 볼 수 있는 용품	없음
	7		지팡이	보행이 불편한 경우 보행을 보조하는 용품	2년
	8		욕창예방방석	장시간 앉아 있거나 휠체어를 이용할 경우 욕창을 예방하는 용품	3년
	9		자세변환용구	장시간 누워있는 경우 자세 및 위치 변환을 보조하는 용품	없음
	10		요실금팬티	배뇨 조절 기능 저하 등으로 요실금증상이 있는 어르신에게 쾌적한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용품	없음
대여 품목	11		수동휠체어	보행이 불가능하거나 장시간 보행이 곤란한 경우 이용하는 용품	5년
	12		전동침대	일어나는 동작 등을 보조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전동식 용품	10년
	13		수동침대	일어나는 동작 등을 보조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수동식 용품	10년
	14		이동욕조	거동이 불편한 경우 자신이 거주하는 방에서 외부로의 이동없이 간편하게 목욕 가능한 용품	5년
	15		목욕리프트	입욕시 높낮이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목욕을 실시하며 수발자의 편리를 도모하는 용품	3년
	16		배회감지기	인지장애가 있는 수급자의 배회 및 실종을 미연에 방지하는 용품(GPS형, 매트형 등)	5년
구입 또는 대여 품목	17		욕창예방매트리스	체중을 분산하고 통풍을 원활하게 하여 욕창을 예방하는 용품	3년
	18		경사로(실외용) 경사로(실내용)	실내외에서 수동휠체어 또는 성인용보행기 이용 시 이동성 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용품	8년 2년